



AI 융합 창의 트랙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

[제목개정 2022. 9.15]

| | |
|------|------------|
| 제정일 | 2019.12. 1 |
| 개정일 | 2023. 7. 1 |
| 개정차수 | 6차 |
| 담당부서 |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 |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AI 융합 창의 트랙제 교육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중요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 9.15)
- 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 (개정 2022. 3. 1, 2023. 3. 1)
 ② 위원장은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각 트랙의 책임교수로 한다. (개정 2021. 4.15, 2023. 3. 1, 2023. 7. 1)
 ③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 (개정 2023. 3. 1)
- 제 3조 (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개정 2022. 3. 1)
- 제 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.
 1. 「AI 융합 창의 트랙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」에 관한 자문 (개정 2020. 8.10, 2022. 9.15)
 2. 교육과정 운영방법 및 평가에 관한 심의
 3. 트랙제 기자재 구입에 관한 심의 (개정 2022. 3. 1)
 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 5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1/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(개정 2023. 3. 1)
- 제 6조 (회의록) 위원회에서 자문·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「AI 융합 창의 트랙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」에 관한 결과는 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한다. (개정 2020. 8.10, 2022. 9.15)
- 제 7조 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